

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동아리 연합회(이하 "동아리연합회"라 한다)에 속하는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 및 범위) 모든 동아리는 동아리 연합회에 속하고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등록요건)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등록은 1학기 초 등록기간 내 2개 전공이상 10인 이상(각 전공 2인 이상)의 서명날인으로 반드시 본회에 등록해야 한다.<개정 2007.09.01>
2. 대학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.
3. 해당학기 활동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.
4. 신규동아리는 동아리 연합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(단, 유사 동아리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.)
5. 구비서류를 필히 제출한다.(단체등록서, 대표자 서약서, 사진, 지도교수 동의서, 사업계획서, 임원 명단, 회원명단, 회칙, 연혁)

제4조(등록절차 및 승인) 동아리 등록(신규, 재등록 포함)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 연합회장 명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07.22.>

제5조(등록 시 구비서류) 동아리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동아리 등록신청서(소정양식)
2. 대표학생 서약서(소정양식)
3. 대표학생 카드(소정양식)
4. 지도교수 동의서
5. 연중사업 계획서
6. 연혁 및 소개
7. 회원명단
8. 동아리 회칙

제6조(임원선출) ①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동아리 회칙에 따른다.

②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임원명단을 총학생회를 경유하여 입학홍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07.22.>

제7조(동아리 지도교수) ① 동아리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동아리단체로부터 추대 받아 입학홍보처장을 경유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3.12.4.><개정 2021.07.22.>

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의 단체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 할 수 없다. 다만, 향우회, 동문회 중 1개만 겸직이 가능하다.<개정 2021.07.22.>

③ 동아리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책임, 지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7.22.>

④ 동아리 지도교수의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학홍보처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21.07.22.>

⑤ 동아리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10일 이내에 위임 동아리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취임승락서를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입학홍보처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동아리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 지도교수를 지정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<개정 2021.07.22.>

제8조(재정) ①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동아리 연합회의 예산은 학생회비의 예산 편성 내역에 책정되어야 한다.

제9조(활동범위)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학술·문예·종교·봉사·취미·스포츠 분야로 한다.

③ 모든 활동은 지도교수가 승인한 활동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.

④ 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은 최소한 행사집행일 1주일 전에 행사원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07.22.>

⑤ 모든 행사는 종료 후 5일 이내에 행사결과 보고서를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모든 동아리는 학생들의 면학과 학교 행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.

제10조(동아리실 관리) ① 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
② 동아리실에서는 도박, 고성방가, 음주, 취침 행위를 금지한다.

③ 동아리실 사용시간은 09:00 ~ 21:00로 한다. 단, 21시 이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학홍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07.22.>

④ 동아리실에서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.

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의 사용을 취소한다.

제11조(간행물 발간허가 신청) 순수학술 이외의 간행물은 일체 발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동아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입학홍보처장의 허가를 받아 발간할 수 있다.<개정 2021.07.22.>

제12조(등록취소)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위배된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동아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2.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
3. 회칙 및 학칙을 위반한 경우
4. 동아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본 준칙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
5. 지도교수 사임 후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
6.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

제13조(비품관리) ① 동아리실에 비치된 비품을 손·망실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동아리회장이 변경될 경우는 총학생회장의 입회 하에 업무 및 비품에 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

③ 비품은 동아리회장이 관리하며 손망실된 비품은 그 동아리에서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) ① 본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.

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9. 1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4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.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